

법무매거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지방법원·고법 2심 재판 합친 '항소법원' 검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나뉘어 있는 항소심(2심) 재판부를 통합한 '항소법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7일 제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결정했다.

자문회의는 분리된 항소심 심급 구조를 명확하게 해 국민의 절차적 만족감과 항소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 항소법원의 수와 인적 구성, 관할 등 구체적인 방안은 법원행정처가 연구·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사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의 쟁점을 조기에 명확히 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개정 전 단계에서도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형사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1심 판결이유 인용범위를 확대하고 △무변론항소기각판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형사재판 양형 심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조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 조사관에게 형량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하는 양형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양형심리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과 참여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양형인자표를 송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양형심리모델 시범실시 재판부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자문회의는 외국인과 이주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정에서 양질의 통·번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번역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 및 통·번역인 후보자에 대한 경력조회시스템 마련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홍보 및 외

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통·번역인 풀(pool)의 확대 △영상재판의 확대에 기반한 상근 법정통역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들이 재판 외 사법절차에서도 인증 통·번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범위 확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성배(53·사법연수원 23기)서울서부지법원장, 이상균(57·25기)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성수(51·29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서현(37·41기)의정부지법 판사, 박선영 한국젠더법학회장, 이종엽(59·18기)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65·15기)한국법학교수회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7일 회의에서는 전국 법원장회의 추천으로 서경환(56·21기) 서울회생법원장이 새 위원으로 임명됐다.

(출처/법률신문)